

평창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박춘희 의원)

의안 번호	395
----------	-----

발의연월일: 2025년 3월 6일

발 의 자: 박춘희 의원

찬 성 자: 김광성, 이은미, 이창열 의원

1. 제안이유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이고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의 순환을 촉진하여,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 요령(안 제5조)

다. 1회용품 사용억제(안 제6조)

라. 재활용 홍보 및 교육(안 제7조)

마. 재활용 촉진 지원 및 무인회수기 설치(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순환경제 사회 전환 촉진법」, 「폐기물관리법」 등

나. 예산조치 : 불임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집행기관의견수렴 : 2025. 2. 20. ~ 2025. 2. 27.(8일간), 아래 표 참조

조례안(의회안)	수정안(환경과)	사유	의회 의견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이하 생략)----</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이하 생략)----</p>	<p>우선 고려되는 법령을 선두로 하여 표현</p>	<p>[수용]</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재활용 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사용되었거나 ----(이하 생략)----</p> <p>3. (생략)</p> <p>4.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라 같은 용도에 ----(이하 생략)----</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재활용 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사용되었거나 ----(이하 생략)----</p> <p>3. (생략)</p> <p>4. “1회용품”이란 법 제2조제15호에 따라 같은 용도에 ----(이하 생략)----</p>	<p>중복되는 법령 표현을 적절히 하기 위해 약칭 사용</p>	<p>[수용]</p> <p>(단 여러 법령이 혼재되어 있어 “법”이라고 약칭하면 혼동의 소지도 있다고 판단됨)</p>
<p>제3조(군수의 책무)</p> <p>① (생략)</p> <p>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p> <p>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p>	<p>제3조(군수의 책무)</p> <p>① (생략)</p> <p>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p> <p>1.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p>	<p>제2항 및 제2항제1호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군수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설정·운영할 수 있음’으로 명시되어 있음.</p>	<p>[일부수용]</p> <p>제3조제2항제1호 재활용 가능자원의 품목 및 설정 등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4조제2항에 재량조항으로 규정</p>

<p>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p> <p>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p>	<p>다)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설정 및 운영</p> <p>2. 재활용 가능자원의 배출 및 수거 체계 개선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분리수거용기의 확충·보급</p> <p>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및 시행</p>	<p>제2항제2호 및 제3호 - 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변경</p>	<p>되어 있음.</p> <p>다만 제3조2항 분리수거용기의 확충·보급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6조제1항에 의무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3조제3항 집행계획 등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제3항에 의무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음.</p> <p>따라서 재량, 의무조항 모두 수용가능한 <총괄 조정한다>로 조정</p>
<p>제5조(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3조에 따른 ----(이하 생략)----</p>	<p>제5조(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법 제13조와 지침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이하 생략)----</p>	<p>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배출품목을 추가 또는 조정하는 등 적합한 분리배출 유형을 설정·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괄하기 위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4조도 반영 필요</p>	<p>[수용]</p>
<p>제7조(재활용 홍보 및 교육)</p> <p>① (생략)</p> <p>② 군수는 주민, 사업장이나 단체에게 재활용에 관한 홍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하 생략)----</p>	<p>제7조(재활용 홍보 및 교육)</p> <p>① (생략)</p> <p>② 군수는 주민, 사업장이나 단체에게 재활용에 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하 생략)----</p>	<p>법적 필수사항인 홍보 외에 교육은 실시할 수 있음으로 변경</p>	<p>[수용]</p>

<p>제8조(재활용 촉진 지원) ① 군수는 「<u>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u>」 제31조제1항과 「<u>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u>」에 따라 <u>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u>할 수 있다.</p> <p>② 군수는 재활용 촉진을 위해 무인회수기 <u>설치를 확대하여야 한다.</u></p> <p>③ 군수는 재활용 포인트제를 운영하여 페트병, 플라스틱, 종이팩 등 무인회수기를 통해 분리배출한 주민에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p> <p>③ 군수는 재활용 포인트제를 운영하여 페트병, 플라스틱, 종이팩 등 무인회수기를 통해 분리배출한 주민에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8조(재활용 촉진 지원) ① 군수는 <u>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 또는 현물을 지원</u>할 수 있다.</p> <p>② 군수는 재활용 촉진을 위해 무인회수기 <u>설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u></p> <p>③ <u>삭제</u></p>	<p>제8조제1항 「<u>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u>」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금 보조 대상은 재활용시설의 설치 사업 등을 하는 재활용사업자로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개인이나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근거로 부적절하므로 삭제. 무인회수기를 통한 보상 뿐만 아니라 재활용품 수거보상제 등을 통하여 장려금 및 현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내용 추가</p> <p>제8조제2항 무인회수기 설치·운영은 설치비 뿐만 아니라 매년 운영비에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평창군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확대하여야 한다.”에서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변경</p> <p>제8조제3항 같은 조 제1항의 내용 중복되므로 삭제</p>	<p>[수용]</p>
--	--	---	-------------

[조례안]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재활용 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4. "1회용품"이란 법 제2조제15호에 따라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평창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평창군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따른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설정 및 운영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배출 및 수거 체계 개선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분리수거용기의 확충·보급
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배출하고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법 제13조와 지침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은 「평창군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 1과 같다.

제6조(1회용품 사용 억제) ① 군수는 군 및 공단, 출연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군이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재활용 홍보 및 교육) ① 군수는 관내 재활용선별시설에 대한 견학 및 체험을 활성화 하는 등 재활용선별시설을 자원재활용에 대한 홍보·교육

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 사업장이나 단체에게 재활용에 관한 홍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홍보·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용 물품을 제작하거나 구입하여 홍보·교육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재활용 촉진 지원 및 무인회수기 설치) ① 군수는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 및 현물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활용 촉진을 위해 무인회수기 설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 7. (생략)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 14. (생략)
15.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 17. (생략)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31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借款)을 알선할 수 있다.

1. 재활용시설의 설치 사업
2. 재활용지정사업자,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자원재활용사업
3. 제25조의3에 따른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운영
4. 제34조에 따른 재활용단지 조성 사업
5.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처리
6. 자원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7. 유통지원센터의 설립·운영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 외에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 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8. ~ 9. (생략)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 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8. ~ 9. (생략)

제3조(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분리수거를 하여야 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 1의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각 시·군·구별 여건을 고려하여 분리수거를 시행하되,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분리배출표시 대상인 포장재는 분리수거 대상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수거하여야 한다.

제4조(분리배출의 유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내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별표 1 제1호의 품목에 따라 분리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거형태(공동·단독주택 등), 거점 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여부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배출품목을 추가 또는 조정하는 등 적합한 분리배출 유형을 설정·운영할 수 있으며, 분리배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단독주택 지역 등에서는 별표1 제2호의 배출 요령에 따라 통합 배출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별처리 과정 등을 기계화·자동화하는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배출 및 수거체계를 개선하여 수집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분리수거용기의 설치·관리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분리수거용기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는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용기를 지속적으로 확충·보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수거방식으로 수거하거나 법 제12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라 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품목·성상별로 분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직접 비치토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분리수거용기 설치장소의 특성, 배출품목·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용기의 종류를 결정하는 등 분리수거용기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단독주택지역의 재활용가능자원 통합수거를 실시하는 경우 통합배출에 적합한 전용봉투, 유리병 전용봉투, 전용그물망 등 지역여건에 알맞은 통합 전용용기를 선택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편의성 제고 및 수거량 확보 등을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지역화폐 등으로 보상해주는 수거보상제도(무인회수기를 포함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조례안 제3조(군수의 책무), 제7조(재활용 홍보 및 교육), 제8조(재활용 촉진 지원 및 무인회수기 설치)

2. 미첨부 근거 규정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2호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도시안전국 환경과장 신양문
연락처	(033) 330 - 2340